■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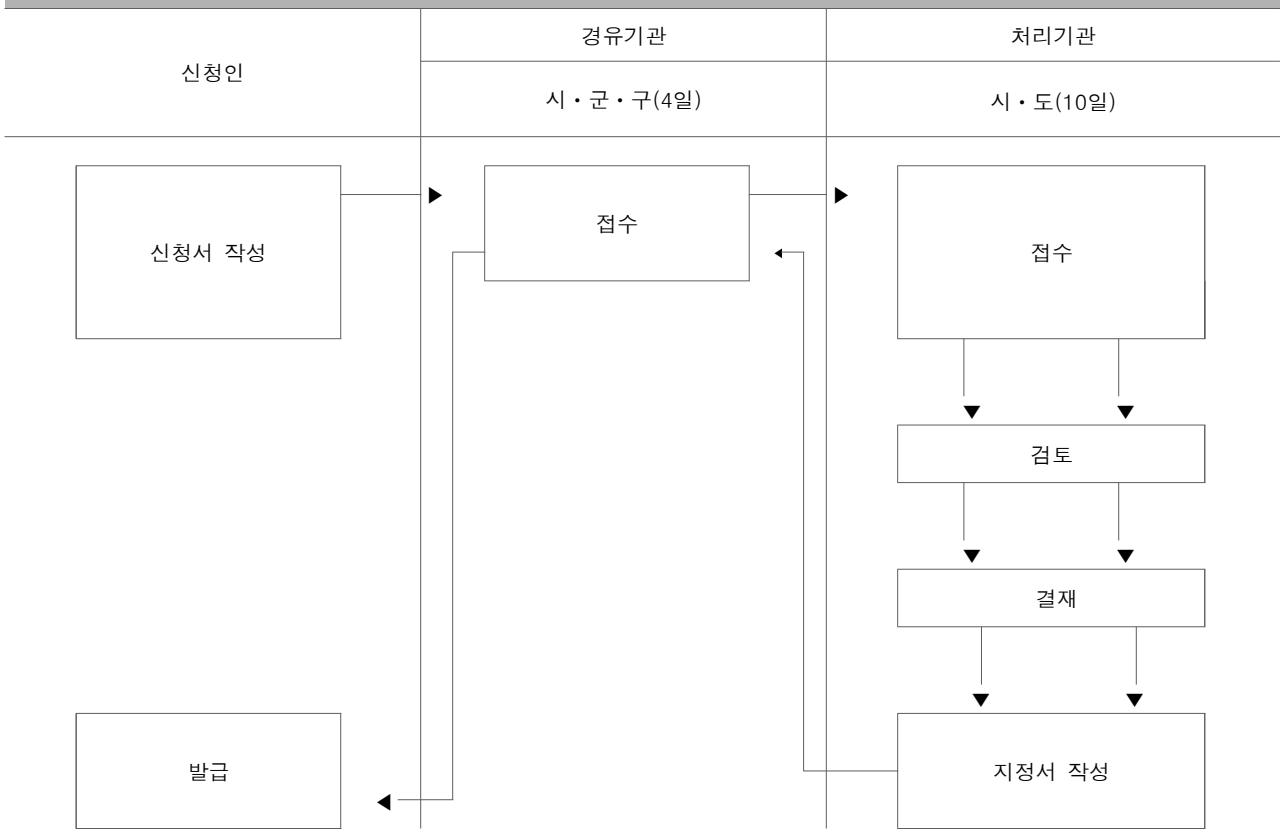
처리절차